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120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104240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가산세 56,214,23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21,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취득세 본세 261,705,01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26,170,500원의 각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4~5행의 "취득세 370,260,240원" 뒤에 "(본세 261,705,01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52,341,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6,214,230원)"을 추가하고, "농어촌특별세 31,791,920원" 뒤에 "(본세 26,170,5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621,420원)"을 추가한다.

○ 제3쪽 제5, 7, 8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2015. 3. 3.자 각 부과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사.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3. 3.자 각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부과처분 중 취득세 본세 261,705,01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26,170,500원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도 취하하였다(따라서 당초의 2015. 3. 3. 자 각 부과처분 가운데 위와 같이 감액경정 및 취하되고 남은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만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라 할 것인바,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신탁법상 수탁자인 원고나 위탁자인 D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존재하였기 때문이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D의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데에는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에게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산세율을 정함에 있어 미신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심판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3. 3.자 각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세액경정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논리필연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이 2012. 6. 14. 선고한 2010두2395 판결에 따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함으로 인한 취득세(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유권자인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판결 법리는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은 뒤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위 지목 변경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2. 11. 7.경에야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원고는, 비록 위 지목 변경이 위탁자인 D의 비용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판결 법리에 따라 수탁자(소유자, 취득자)인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 취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면제될 경우에는 위 판결 법리와 달리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의 납세의무자를 신탁법상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 판결 법리나 신탁법, 지방세법 및 이 사건 특례규정 등 관련 규정의 문언에 배치되는 해석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기하는 세법 해석상 의문점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도 2019. 10. 31. 선고한 2016두42487 판결 등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과 유사하게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곧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라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앞서 본 2010두2395 판결을 들었다.

라)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D로부터 취득세 감면 신고를 받은 피고가 단순히 그 신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D에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D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함께 내려진 것은 아니며, 이후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는 D가 아니라 원고가 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이 적절하게 지적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위 신고 당시 D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게 신탁된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피고 등 과세당국에 질의하지 않은 채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과세당국 내지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그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찾을 수도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224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임현태

판사 성하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제7조(신고·납부 등)

④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끝.